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mhcho@kiep.go.kr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ang@kiep.go.kr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 이어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이며, 동 기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수는 총 1,478건,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무역정책에 비해 교역에 즉각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변화 혹은 왜곡을 초래함. 대부분의 경우 교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
- ▶ 반덤핑 조사당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적 재량을 확대하는 추세
 -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강화한 특별한 시장 상황(PMS)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칙임. 이후 EU, 중국, 인도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음.
 - 미 상무부의 PMS 적용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왔음. 다만 최근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PMS 적용을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2021년 들어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PMS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 외 일부국의 PMS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판정도 최근 WTO에서 내려진 바 있음.
 - 미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AFA 적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중국과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NME)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고, 시장경제국에도 상당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됨. 다만 한국에 대한 Total AFA 비율은 다른 시장경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2021년 3월에 WTO 패널은 한국산 철강제품 및 유입식 변압기에 미 상무부가 적용한 AFA 조치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으로 판정함. 이번 선례를 향후 상무부 대응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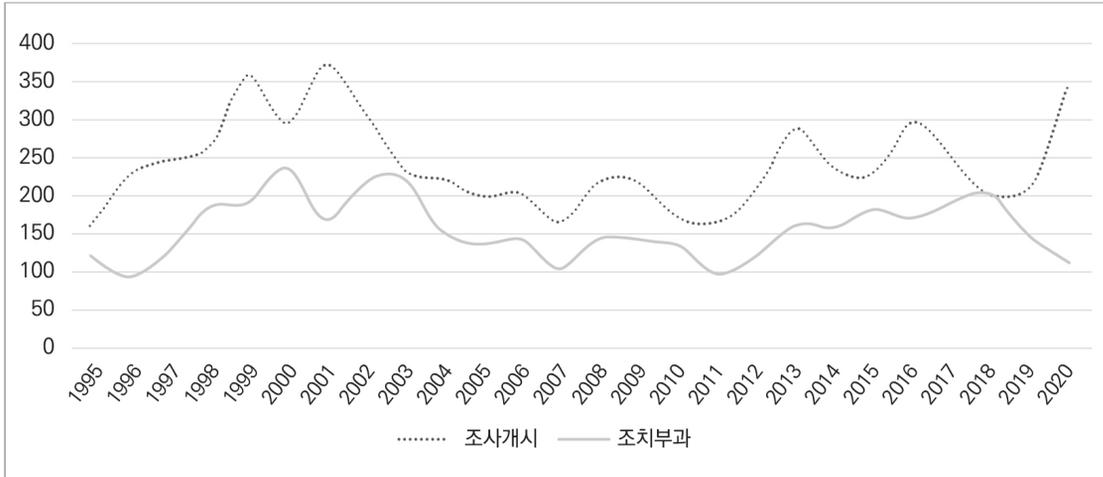
- 1995년 WTO 출범 이래 반덤핑 조사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과거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불공정 무역 시정뿐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 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반덤핑조치 대상 품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조사 방식이 점차 강화·다양화
 - 조사당국이 부담하는 법적 제약을 줄이고 광범위한 조사권한과 행정적 재량을 허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
 -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된 반덤핑 조사기법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가 있음.
 - PMS와 AFA는 의회가 과세와 무역정책에 관한 연방헌법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한 전형적인 예
 - 미국뿐 아니라 EU, 중국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시행 중

- 반덤핑조치의 주요 부과대상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반덤핑 제도 및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현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현황과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동향을 살펴본 후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PMS, AFA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EU, 호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 현황과 관련 사례 및 WTO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림 1. 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1. 8. 6).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① 전 세계 반덤핑 조사 현황(1995~2020년)

- 1995~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
 -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으로 그 비중은 전 세계 총 건수의 17.0%
 -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 아르헨티나 394건 등이 있음.
 - 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건수는 총 4,071건이며, 이 중 최대 제소국인 인도의 부과 건수는 718건임.
 - 터키는 조사개시 232건(3.7%), 조치부과 201건(4.9%)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치 부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주는 조사개시 369건(5.9%), 조치부과 168건(4.1%)으로 조사개시의 비중이 높음.
- 1995~2020년 동안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이며, 건수는 총 1,478건으로 그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 이어서는 한국에 대해 471건(7.5%), 대만에 대해 326건(5.2%)임.
 - 반덤핑 조치부과의 대상이 된 건수는 중국이 1,069건으로 전 세계 총 반덤핑 건수의 26.3%

-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대비 조치부과 건수의 비중을 계산하면 약 65%인데, 중국에 대한 조사개시 대비 조치부과 건수 비중은 약 72%로 더 높음.

표 1.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순위(수입국 기준)(1995~2020년)

(단위: 건)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수입국	건수	비중(%)	순위	수입국	건수	비중(%)
1	인도	1,071	17.0	1	인도	718	17.6
2	미국	817	13.0	2	미국	523	12.8
3	EU	533	8.5	3	EU	340	8.4
4	브라질	427	6.8	4	아르헨티나	278	6.8
5	아르헨티나	394	6.3	5	브라질	266	6.5
6	호주	369	5.9	6	중국	241	5.9
7	중국	292	4.6	7	터키	201	4.9
8	캐나다	271	4.3	8	호주	168	4.1
9	남아공 ¹⁾	238	3.8	9	캐나다	165	4.1
10	터키	232	3.7	10	남아공	144	3.5
12	한국	155	2.5	12	한국	102	2.5
	전체	6,300			전체	4,071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1. 8. 6).

② 2010년대 전·후반기 반덤핑조치 변화

● 2010년대 들어 반덤핑 조사를 많이 개시한 국가로는 인도, 미국, 브라질 등이 있음.

-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20년)를 비교하면, 인도의 조사개시 건수는 연평균 30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고, 미국은 연평균 17건에서 48건으로 증가
 - 브라질의 경우 2010~14년 연평균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20년 연평균 10건으로 감소
 - 호주, 아르헨티나, EU 등은 평균적으로 연간 10건 이상의 조사개시 건수를 기록
- 같은 기간 반덤핑조치를 많이 부과한 국가는 조사개시와 마찬가지로 인도, 미국, 브라질 등임.
 - 2010~14년과 2015~20년을 비교하면 인도는 연평균 23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고, 미국 역시 11건에서 30건으로 증가
 - 브라질은 같은 기간 19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으며,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는 연간 10건 내외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1) 남아공이 취한 모든 반덤핑조치는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회원국인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도 동일하게 취한다.

표 2. 2010년대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순위(수입국)

(단위: 건)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수입국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순위	수입국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1	인도	30	55	1	인도	23	31
2	미국	17	48	2	미국	11	30
3	브라질	38	10	3	브라질	19	12
4	호주	16	13	4	중국	9	11
5	아르헨티나	12	13	5	아르헨티나	10	9
6	EU	13	11	6	호주	8	8
7	캐나다	9	13	7	캐나다	5	8
8	중국	8	12	8	EU	6	7
9	터키	7	9	9	터키	6	6
10	파키스탄	6	9	10	파키스탄	5	7
	전체	214	257		전체	135	168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1. 8. 6).

-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반덤핑 조사건수의 약 28%를 차지
 -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건수는 2010~14년 연평균 59건, 2015~20년 연평균 71건으로 증가
 - 한국에 대해 연간 약 20건가량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 대만, 미국, 인도, 태국 등은 연간 약 10건 내외 수준임.
 - 반덤핑조치 부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반덤핑 부과건수는 2010~14년 연평균 44건에서 2015~20년 연평균 51건으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의 약 31%를 차지
 - 한국에 대한 반덤핑 부과건수는 같은 기간 10건에서 1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만·미국 등에 대한 조치 부과는 소폭 감소, 인도·베트남 등에 대한 부과는 소폭 증가
- 2010년대 반덤핑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야는 '비(非)금속 및 그 제품'으로, 이는 과거에도 반덤핑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분야였으나, 2010년대 들어 그 건수와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
 - 조사개시 건수 기준으로 '비금속 및 그 제품'은 2010~14년 연평균 73건(34.1%)에서 2015~20년 연평균 103건(40.1%)으로 증가
 - 조치부과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연간 46건(34.1%)에서 69건(41.1%)으로 증가

표 3. 2010년대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순위(수출국)

(단위: 건)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수출국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순위	수출국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1	중국	59	71	1	중국	44	51
2	한국	17	20	2	한국	10	15
3	대만	13	10	3	대만	9	7
4	미국	12	8	4	태국	7	7
5	인도	9	10	5	미국	8	5
6	태국	9	9	6	인도	4	7
7	말레이시아	6	10	7	일본	5	6
8	베트남	4	10	8	인도네시아	5	5
9	일본	7	8	9	베트남	3	6
10	인도네시아	5	9	10	EU	5	4
	전체	214	257		전체	135	168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1. 8. 6).

표 4. 2010년대 품목 분야별 반덤핑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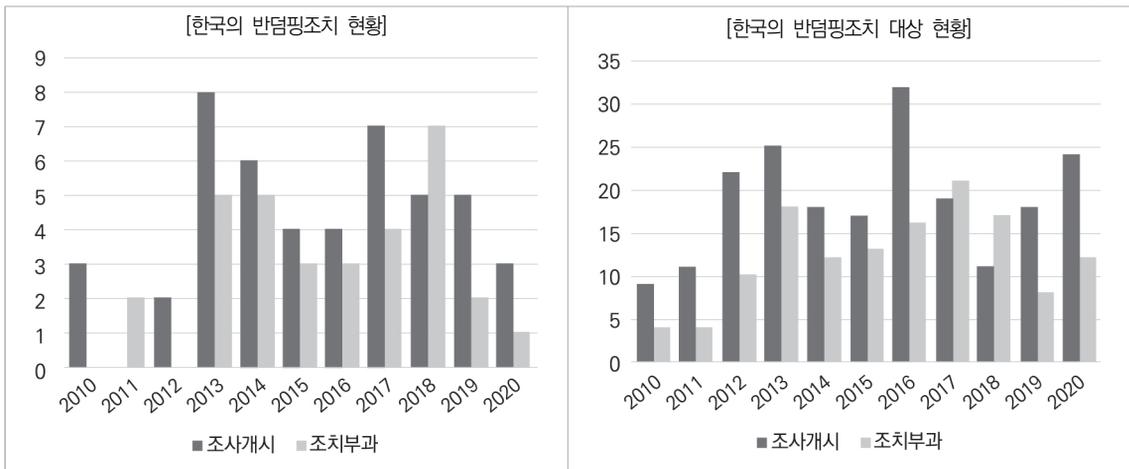
HS (부)	품목명	조사개시		조치부과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1	0	1
2	식물성 생산품	2	2	1	1
3	동·식물성 유지	0	-	-	0
4	조제식료품	3	5	1	2
5	광물성 생산품	2	4	1	2
6	화학공업 생산품	42	48	30	36
7	플라스틱·고무	33	32	17	20
8	원피·가죽·모피	-	-	-	-
9	목재 및 그 제품	5	4	2	2
10	펄프·종이·인쇄서적	11	11	5	7
11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10	17	7	7
12	신발류·모자류·산류·가발	-	1	0	-
13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13	10	11	7
14	진주·귀석·귀금속	-	-	-	-
15	비(非)금속 및 그 제품	73	103	46	69
16	기계류·전자기기	15	10	9	9
17	수송기기	3	3	2	3
18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악기	1	2	1	1
19	무기	-	-	-	-
20	잡품	1	5	1	2
21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	-	-
	전체	214	257	135	168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1. 8. 6).

- 한국은 반덤핑조치 대상 건수로는 세계 2위에 해당하지만, 반덤핑조치 건수로는 1995~2020년 기준 12위, 2010~20년 기준 17위
 - 우리나라는 1995~2009년 평균 7.2건, 2010~20년 평균 4.3건 반덤핑조사를 개시
 - 한국이 반덤핑조사를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평균 17.7건, 평균 18.7건임.
 -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사를 하는 주요 산업은 ‘비금속 및 그 제품’과 ‘플라스틱·고무’임.
 -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사를 받은 주요 산업은 ‘비금속 및 그 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고무’, 그리고 ‘기계류·전자기기’임.

그림 2. 2010년대 한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단위: 건)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1. 8. 6).

2)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① 개요

-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에 다른 무역정책에 비해 교역에 즉각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변화 혹은 왜곡을 초래
 - PMS, AFA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활용될수록 긍정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며, 기존보다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
-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직접적인 무역감소효과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반덤핑조치 대상국에서 조치 부과국으로 해당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 무역전환효과는 반덤핑조치 부과국의 (반덤핑조치 대상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
- 무역굴절효과는 반덤핑조치 대상국에서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
- 무역위축효과는 반덤핑조치 부과국의 반덤핑조치 대상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감소하는 효과

② 분석 방법 및 자료

-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2010~19년으로 설정하였으며 HS 6단위를 기준으로 분석
 - 국제 통계로 국가간 비교 가능한 세부 세번이 HS 6단위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에서의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분석 기간을 2010년 이후로 한정하여 1998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최대한 통제
- HS 6단위 수준의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Lu, Tao, and Zhang(2013), Liu and Shi(2017)가 제시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의 데이터 및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실증분석

③ 분석 결과

- 전 품목뿐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
 - 반덤핑조치 부과(조사)국 혹은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
- 2010~1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우리의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우리나라가 빈번히 반덤핑조사를 받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미국(반덤핑조치 조사국)-한국(반덤핑조치 조사대상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 분석
 - 무역전환효과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속 산업에서는 발생
 - 무역전환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면 반덤핑 조사국의 소위 국내산업 보호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 자국 내 소비자의 부담 증가
- 무역갈절효과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식별되었으나 금속 산업에서는 식별되지 않음.
- 금속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이 우리의 주력 시장이고 미국 수출에 특화된 품목이 많아 무역갈절효과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단, 본 분석은 산업 단위에서의 평균적 효과로 세부 품목 혹은 기업 단위에서의 효과는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

3) 조사기법 다양화의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① 특별한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개념

- PMS는 반덤핑 조사당국이 특정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통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덤핑 판정에 해당 시장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미국의 PMS 시행 현황

-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제정을 통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상 반덤핑 조사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
- TPEA를 통해 개정된 PMS 조항을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국내제조업 보호를 강조하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임. 개정된 PMS 조항은 2017년 4월 1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연례재심에서 처음 적용됨.²⁾
- 상무부는 덤핑 마진 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출한 생산원가 자료 중 수출국에서의 실제 판매 자료를 고려하지 않기 위한 근거로 PMS를 적극 활용
- 2017~21년 상무부가 PMS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총 27건임. 이 중 17건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PMS 적용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이었으나 2021년 유정용강관, 송유관, 스탠다드강관, 강벽사각파이프 등 한국산 철강제품의 최종재심에서 PMS 적용을 부정함.

2) (i) 한국은 저가의 중국산 열연강재를 수입하는데 그 결과 OCTG의 가격이 왜곡되고, (ii) 한국정부는 열연강재의 국내생산에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iii) 한국 내 열연코일 공급업자와 OCTG 생산업자 간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 열연강재의 원가가 왜곡되고, (iv) 한국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의 가격 책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collectively) 고려'하여 '전체적으로(as a whole)' 보았을 때 특별한 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 한편 이러한 접근법에 더하여, 보다 최근에는 몇 개 사건에서 조사신청인들의 요구로 인해 상무부는 생산원가 왜곡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회귀분석 방식이 사용된 바 있음. 예를 들어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서 상무부는 수입 열연강재의 평균가격에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신청자가 제시한 회귀모형을 활용함.

표 5. PMS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의 국별 비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아르헨티나		1				1
독일				1		1
인도				1	1	2
인도네시아		1				1
한국	1	3	6	7		17
태국		1	1		1	3
터키			1	1		2
총계	1	6	8	10	2	27

주: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만을 포함하였으며, 최종판정을 기준으로 연도를 부여함.

자료: <https://www.federalregister.gov>(검색일: 2021. 12. 31)에서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을 검색한 최종 판정사건에 대해 PMS 관련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저자 정리.

표 6. PMS가 적용된 품목 및 횟수(국별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한국	유정용강관(재심)	유정용강관(재심)	유정용강관(재심)	유정용강관(재심)		4
		송유관(재심)	송유관(재심)	송유관(재심)		3
		스탠다드 강관(재심)	스탠다드 강관(재심)	스탠다드 강관(재심)		3
			대구경강관(원심)			1
			강벽사각파이프(재심)	강벽사각파이프(재심)		2
			도금강판(재심)	도금강판(재심)		2
				냉연강판(재심)		1
				열연강판(재심)		1
인도				용접 탄소강 표준 파이프 및 튜브(재심)	용접 탄소강 표준 파이프 및 튜브(재심)	2
터키			대구경강관(원심)			1
				일반강관(재심)		1
독일				단조강 유체 엔드블록(재심)		1
태국		원형 용접 탄소강관 및 튜브(재심)	원형 용접 탄소강관 및 튜브(재심)		원형 용접 탄소강관 및 튜브(재심)	3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원심)				1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원심)				1
합계	1	6	7	10	2	27

주: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준으로 연도를 부여함.

자료: <https://www.federalregister.gov>(검색일: 2021. 12. 31)에서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을 검색한 최종 판정사건에 대해 PMS 판정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표 7.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련 PMS 조정

최종 판정일	원심/재심	조사대상 기간	판정내용	비고
2014년 9월	원심	2012.7.1~ 2013.6.30	현대: 15.75% 넥스틸: 9.89% 기타: 12.82%	구성가격 산정(이익산정 시 Tenaris의 2012년 이익률 26.11% 적용) 현대, 넥스틸 FA 적용
2017년 4월	1차 재심	2014.7.18~ 2015.8.31	세아: 2.76% 넥스틸: 24.92% 비검토기업: 13.84%	PMS 최초적용 사건 (포스코 열연강판 사용에 따라 포스코 CVD%: 47.2% 적용)
2017년 7월	1차 재심 재산정	2014.7.18~ 2015.8.31	넥스틸: 29.76% 비검토기업: 16.26%	Maverick, 넥스틸이 오류로 재산정 요구
2018년 4월	2차 재심	2015.9.1~ 2016.8.31	세아: 6.75% 넥스틸: 75.81% 비검토기업: 6.75%	PMS 조정(포스코 CVD%: 47.2%) 넥스틸 Total AFA 적용 *25% 관세 면제혜택 ³⁾
2019년 5월	3차 재심	2016.9.1~ 2017.8.31	세아: 16.73% 넥스틸: 32.24% 비검토기업: 24.49%	PMS 조정 (포스코 CVD%: 34.22%)
2020년 7월	4차 재심	2017.9.1~ 2018.8.31	세아: 3.96% 현대: 0% 비검토기업: 3.96%	PMS 조정 (회귀분석: 17.13%)
2020년 9월	1차 재심 재산정	2014.7.18~ 2015.8.31	세아제강: 2.76% → 2.97% 넥스틸: 29.76% → 3.63% 비검토기업: 16.26% → 3.30%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19. 1. 2)
2020년 11월	2차 재심 재산정	2015.9.1~ 2016.8.31	세아제강: 6.75% → 3.40% 넥스틸: 75.81% → 18.29% 비검토기업: 6.75% → 10.85%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19. 6. 17)
2021년 6월	3차 재심 재산정	2016.9.1~ 2017.8.31	세아제강: 16.73% → 5.28% 넥스틸: 32.24% → 9.77% 비검토기업: 24.49% → 7.53%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21. 4. 14) *CIT 승인 이전
2021년 7월	5차 재심	2018.9.1~ 2019.8.31	세아: 0.77% 현대: 0.00% 비검토기업: 0.77%	미소마진
2022년 1월 (예정)	4차 재심 재산정	2017.9.1~ 2018.8.31	-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21. 10. 19) *상무부 재산정 결과 제출 이전

자료: KITA 수입규제 DB - 유정용강관(<https://db.kita.net/cmmrcInfo/cmer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pageIndex=1&tird=&sContinent=T NAC&sNation=US&sSuitCouEtc=&sKeySel=2&sKeyword=OCTG&sRestGubun=RA0003&sDtGb=&sStartDt=&sEndDt=&sItem=&recordCountPerPage=10&sOrder=1>, 검색일: 2021. 12. 31)을 기초로 관련 내용 저자 정리.

● 최근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PMS 적용을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주목할 필요

- CIT는 한국산 송유관, 한국산 유정용강관, 터키산 대구경강관 등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및 행정재심에서 상무부가 내린 PMS 판정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산정 명령을 내림.

3)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해 철강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여 25%의 관세면제를 부과받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품목별 쿼터 적용 시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인 104만 톤 수출이 가능함. 관련하여 『철강금속신문』(2018. 4. 13), 「미, 한 유정용강관 AFA 적용으로 75% 반덤핑 관세 부과」,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70>(검색일: 2021. 11. 10) 참고.

- 예를 들어 한국산 OCTG 반덤핑관세 제1차 행정재심 최종판정(대상기간: 2014. 7. 18~2015. 8. 31), 제2차 행정재심 최종판정(대상기간: 2015. 9. 1~2016. 8. 31), 2020년 7월 13일 발표된 제4차 행정재심(대상기간: 2017. 9. 1~2018. 8. 31)에 대한 상무부 PMS 판정이 CIT에 의해 파기·환송되어 상무부가 덤핑 마진을 재산정함. 4차 행정재심(대상기간: 2017. 9. 1~2018. 8. 31)은 2021년 10월에 CIT가 재산정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상무부가 재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 EU의 PMS 시행 현황

- 2017년 12월에 「반덤핑 기본규정(EU Basic Regulation)」을 개정,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신설하여 1930년 미국 관세법의 PMS 산정방식과 유사한 접근법을 도입
- 반덤핑 기본규정 개정 이후 EU는 중국(2017. 12) 및 러시아(2020. 10)에서의 시장왜곡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중대한 왜곡 조항은 지금까지 중국 관련 반덤핑 사건에만 적용됨.⁴⁾
- 반덤핑 기본규정 개정 이후 2018년 EU가 운영한 반덤핑조치 120건 중 85건, 2019년 121건 중 86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취해짐. ‘중대한 왜곡’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실질적으로 약 15~20%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⁵⁾

● 호주의 PMS 시행 현황

- 호주는 「1901년 관세법」 및 자국 반덤핑위원회의 덤핑·보조금 매뉴얼에 따라 PMS를 적용
- 2005년에 중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무역구제 조사에서 중국에 완전한 시장경제(Market Economy) 지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NME 산정방식을 대신하여 PMS를 적용해 옴.
- 철강, 알루미늄, 태양전지 산업과 관련된 중국산 투입재 등에 대해 PMS가 적용되었으며,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및 산업발전 촉진정책(5개년 계획 등),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국내산업 보조금 지원, 관세, 쿼터 등 국경조치 등을 이유로 PMS를 공정

● 중국의 PMS 시행 현황

- 「중(中) 반덤핑조례」에는 PMS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중국 상무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비교하기 위해 ‘비시장상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을 비시장경제국(NME)으로 보거나 중국에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교역상대국에 ‘비시장상황’ 조항을 적용하는 경향

4) ①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8. 3. 13) ② 중국산 가단주철 튜브 또는 파이프 부품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8. 5. 8) ③ 중국산 유기코팅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5. 2) ④ 중국산 테이블웨어 및 주방용품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7. 12) ⑤ 중국산 텅스텐전극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7. 26) ⑥ 중국산 자전거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8. 28) ⑦ 중국산 다리미판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10. 1) ⑧ 중국산 과산화황산업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20. 1. 16).
5) Weinian Hu and Jacques Pelkmans(2020. 11), “Can Dialogues Advance EU-China Trade Relations?” CEPS Research Report, RR2020-05, p. 11.

- 중국 상무부는 2020년 11월 미국산 프로판올 반덤핑조사에서 미국의 석유 수출 통제, 에너지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미국 에너지·석유화학 부문에 PMS가 있다고 판정하였으며, 2020년 8월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도 와인 산업에 호주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PMS를 긍정

● WTO 차원의 규제 가능성

- PMS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는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이며, GATT/WTO 차원에서 EEC-Cotton Yarn 사건(1995), EU-Biodiesel 사건(2016), Australia-Copy Paper 사건(2020), EU-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Russia) 사건(2020)에서 다뤄진 바 있음.
- WTO 패널은 ① 반덤핑 조사당국이 덤핑 마진 산정에 가격왜곡을 참작하는 것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② 반덤핑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대상국(수출국)에 PMS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높은 입증책임을 부과
- 이처럼 반덤핑 조치국의 국내법원을 통해 PMS를 직접 취소시키는 방법 외에도, 간접적이기는 하나 국제적 차원에서 WTO를 통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② 불리한 가용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 개념

- AFA는 조사 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조사 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반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미국의 AFA 시행 현황

- 미국은 2015년 TPEA 제정을 통해 「1930년 관세법」상 AFA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당국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무부가 AFA를 적용하여 덤핑 판정 및 고율의 덤핑 마진 산정이 가능하게 됨.
- 미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 규칙⁶⁾과 징벌적 성격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칙⁷⁾ 모두를 운영하고 있음.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협조하는 조사 대상기업에는 FA를, 비협조 또는 무응답 조사 대상기업에는 AFA를 적용
- 2015년 TPEA 제정 이후 반덤핑조사에서 AFA 적용이 용이하게 됨. 이에 중국과 베트남 같은 비시장 경제(NME)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어 왔으며 시장경제국에 대해서도 상당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고 있음.

6) 19 U.S.C. § 1677e(a).

7) 19 U.S.C. § 1677e(b)(1).

- 최근 5년간(2017~21년) 반덤핑조치 중인 품목별 AFA 적용을 살펴보면, 철강 분야에서 AFA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음. 특히 NME에서 수입된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100%로 Total AFA가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의 반덤핑조치 중인 사건 중 최근 5개년간 내려진 판정에 따른 사건의 대상국별 AFA 적용을 살펴보면, 비시장경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Total AFA 적용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시장경제국 중에는 반덤핑 부과건수로는 한국이 많으나,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등에 비해 Total AFA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임.

표 8. 미국의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사건에서 연도별 AFA 적용

연도	NME/ME	AFA 적용		AFA 적용 없음	합계	총합계
		Total AFA	Partial AFA			
2021	ME	23	3	18	44	59
	NME	13		2	15	
2020	ME	7	1	7	15	20
	NME	5			5	
2019	ME	8	1	7	16	32
	NME	16			16	
2018	ME	17	1	11	29	41
	NME	12			12	
2017	ME	12	5	8	25	33
	NME	7		1	8	
2016	ME	5	10	12	27	31
	NME	4			4	
2015	ME	2		6	8	15
	NME	7			7	

주: 1) 연도별 분류는 원심의 반덤핑판세 부과명령일(Order date) 기준으로 함.

2) 사건 분류는 DOC 사건번호(호)를 기준으로 함.

3) 사건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라도 Total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TA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Total AFA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PA,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적용 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검색일: 2021. 12. 31)에서 반덤핑판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사건에서 AFA 적용여부, <https://access.trade.gov/>(검색일: 2021. 12. 31)에서 원심 최종판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도별로 집계함.

8) 반덤핑 관련 DOC 사건번호는 A-000(국가번호)-000(국가별 반덤핑조사 누적 수에 따른 번호)의 형태로 한 품목에 대한 여러 국가의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별로 개별 사건으로 분류됨.

표 9. 미국의 규제 중 사건에서 품목별 AFA 적용(2017~21년)

품목	NME/ME	AFA 적용		AFA 적용 없음	합계	총합계
		Total AFA	Partial AFA			
농축산물 및 가공제품 (AG)	ME	2		3	5	7
	NME	2			2	
화학제품 및 의약품 (CH)	ME	5		8	13	20
	NME	7			7	
철강제품 (ISM, ISO, ISP)	ME	37	4	10	51	65
	NME	14			14	
기계/전자제품 (ME)	ME			2	2	4
	NME	1		1	2	
금속 및 미네랄 (MM)	ME	9	1	9	19	25
	NME	4		2	6	
기타 제조제품 (MSC)	ME				0	
	NME	9			9	
플라스틱·고무·석재· 유리제품(PRSG)	ME	1	3	2	6	
	NME	5			5	
운송(TR)	ME		1	2	3	
	NME	7			7	
섬유 및 의류(TX)	ME	6		6	9	
	NME	3			3	

주: 1)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에서는 철강제품(Iron & Steel)을 Mill Products, Other Products & castings, Pipe products로 나누고 있으나 동 표에서는 관련 수치를 합산하여 철강제품으로 표기함.
 2) 사건 분류는 DOC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함.
 3) 사건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라도 Total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TA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Total AFA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PA,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AFA 적용 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검색일: 2021. 12. 31)에서 반덤핑 부과 중인 사건의 원심 최종판정에서 AFA가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품목별로 집계함.

● 인도의 사실상의 AFA 실행 현황

- 인도는 반덤핑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IA: Best Information Available)' 규칙을 빈번하게 적용
- 다만 비협조적인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 BIA에 기초하여 산정된 원가로는 반덤핑 조사신청인이 주장하는 원가 또는 조사 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 중에서 가장 높은 원가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리한 BIA'를 적용하고 있음.
- 인도의 반덤핑 계산의 불투명성과 함께 주요 문제로 지적됨.

표 10. 미국의 규제 중 사건에서 주요국별 AFA 적용 여부(2017~21년)

국가	AFA		AFA 적용 없음	합계
	Total AFA	Partial AFA		
중국	46		1	47
한국	7	1	9	17
인도	8	2	3	13
대만	5	1	3	9
터키	2	2	5	9
스페인	6		3	9
이탈리아	8			8
태국	4		4	8
베트남	6		1	7
인도네시아	3		3	6

주: 1) 주요대상국은 2017~21년 중 최종판정에 따라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인 사건이 6개 이상인 국가로 정함.

2) 사건 분류는 DOC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함.

3) 사건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라도 Total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Total AFA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Total AFA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Partial AFA,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AFA 적용 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검색일: 2021. 12. 31)에서 반덤핑 부과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2017~21년 중 원심 최종판정에서 AFA가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별로 집계함.

● 중국의 사실상의 AFA 실행 현황

- 중국은 「중 반덤핑조례」를 적용하여 미국 반덤핑조사에서의 AFA 관행을 유사하게 재현
- 2020년 11월 미국산 프로판올 반덤핑조사에서 중국 조사당국은 조사 대상기업에 상당 분량의 자료를 단기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신청자의 주장을 기초로 생산원가 및 이윤을 조정, 고율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AFA를 적용

● WTO 차원의 규제 가능성

- WTO 반덤핑협정은 '이용 가능한 사실(FA)'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불리한(adverse)' 가용 정보, 즉 AFA라는 표현은 따로 없음.
- FA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① 필요한 정보에 접근 거부 ②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 거부 ③ 조사를 증대하게 방해한 경우에 이용 가능 정보를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⁹⁾
- AFA 규칙에 가장 가까운 WTO 반덤핑협정상 근거는 부속서2의 제7항일 것이나, WTO 패널은 부속서2가 불리한 추론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¹⁰⁾ 또한 AFA는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피제소국(조사당국) 측에 제6.8조와 부속서2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9)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10) Panel Report, China - GOES, para. 7.302.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경향

- 대표적으로,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 및 유입식 변압기 수입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조치가 문제된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DS539)에서 2021년 3월 19일 WTO 패널은 미국의 AFA 조치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으로 판정함.
-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제6.8조와 부속서2 판정례에서 도출된 위 네 개 요건을 상무부와 소통 및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의식하고 상무부 대응 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제언

① 반덤핑조치에 대한 사전적 대응 강화

- 최근 반덤핑조사 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반덤핑조사가 해당 산업의 글로벌 침체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침체에 주변 수출 경쟁국들이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품목에 대한 수출국이거나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반덤핑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특정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는 품목에 대해 조사가 집중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해당 산업협회 혹은 관련 정부부처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가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 및 원가명세서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시간 여유를 갖고 영어로 준비하여 번역 오류 등으로 인해 AFA를 적용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 협회, 정부, 연구기관 등은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 전반에 걸친 반덤핑조사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 필요
- 철강 업계 등의 경우 과거 반덤핑조사를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협회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전문적으로 대응할 국제통상팀이 존재하나, 처음 제소를 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반덤핑조사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 및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2020년 이전까지 타이어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품목이었으나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 태국,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았고, AFA를 적용하여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이 내려졌음.
 - AFA의 경우 업계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 협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업계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

② 조사기법 다양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PMS, AFA 등 다양한 반덤핑 조사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내 산업 피해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덤핑 마진을 확대하는 등 반덤핑조치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 대상기업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임.
 - 기업 입장에서는 반덤핑조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전산화된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자사의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수출가격에 대한 비교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는 작업 필요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상무부의 PMS, AF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승소 판정을 받은 사례에서 처럼, 반덤핑조치국의 국내법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WTO 미국 패소 사건(DS539)이나 CIT 상무부 판정 파기·환송 사례에서 재판부가 보인 논거를 참고하여 대응
- 반덤핑조치가 국가 차원의 무역조치이며 국내산업 보호 등 산업정책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또한 필요
 - 무역구제정책 등에 대해 양국간 대화와 교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반덤핑 대응에는 조사개시부터 연례재심을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반덤핑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기업 내 회계사, 변호사 등의 통상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
 - 중소기업들의 경우 반덤핑조사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인적·금전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협회·단체 등은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반덤핑조치 대응 전략 등을 지원

③ 무역협정 등을 통한 국가별 대응

- 조사기법 다양화와 관련하여 WTO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FTA 등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노력
 - 우리나라는 인도, 미국, 중국, 호주, EU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무역구제와 관련한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WTO 협정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는 이른바 'WTO Plus'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은 제12.1조에서 조사개시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규정하지 않은 반면, 한·인도 CEPA는 조사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제2.14조에서 조사개시일 10영업일 전 상대국에 통지할 것을 규정
 - 한·중 FTA는 제7.7조에서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 7일 내에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도 제3.9조 제1항에서 조사개시 15일 전 통보할 것을 규정
 - 조사개시 전 통보가 활성화되고 국가간 공조가 활발하게 되면, 업계 의견 수렴 및 기업이 보다 빠른 대응을 하는 데 도움

- AFA와 관련하여 WTO 협정 제6.8조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
 -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한·중 FTA는 제7.7조 제3항에서 반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
 - 한·미 FTA는 무역구제위원회에서, 한·EU FTA는 무역구제협력 작업반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을 논의할 수 있음을 명시

- 인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의 2.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반덤핑 조사건수에서 23.9%를 차지하여 수입액에 비해 반덤핑조사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의 2.6%를 차지하지만 전체 반덤핑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수입액에 비해 반덤핑 조사개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AFA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기업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조사당국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조사방식은 WTO 반덤핑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당국의 재량 행사 시 객관적 조사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KIEP